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8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서천호 · 이인선
이양수 · 서범수 · 권영세
조배숙 · 박충권 · 강승규
김장겸 · 김재섭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,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.

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 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,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,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,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.

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

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08조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”을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”로, “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중고자동차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”을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”로,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”를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에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”를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중고자동차의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”로, “중고자동차와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과”로, “중고자동차 매입가액”을 “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매입가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제3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각각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”을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”로,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”를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”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는 수출용 중고품은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이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.

자동차 매입가액(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)을 뺀 금액

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

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매입가액-----

④ -----
---제3항제2호-----

⑤ -----
---제3항-----
---제4항-----

제4항-----

⑥ -----제5항-----
-----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-----
-----재활용폐자원, 중고자

<p><u>자동차의</u> 범위, 매입세액 공제 및 이월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의</u>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